(4) 일을 그만둘 때

① 해고

고용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 다음과 같을 경우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

(예)

- 일이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, 질병이 결려 직장을 쉬고 있는 기간과 그 후 30 일간의 해고
- 출산 전 및 출산 후에 쉬고 있는 기간(출산 전후 휴업기간)과 그 후 30 일간의 해고
- 일하는 사람의 국적,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해고

일본에서는 고용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적어도 **30** 일 전에 예고를 해야합니다.

해고 사유에 납득할 수 없을 경우나, 정당한 이유 없고 해고되었을 경우에는, 노동기준감독서 등에 문의합시다.

② 퇴직

본인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때에는 고용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.

사원증 및 제복, 건강보험증 등은 회사에 반납합니다.

고용보험

일하고 있는 사람이 실업했을 경우, 일정기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헬로워크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.

자세한 내용은 헬로워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.

★헬로워크 이즈미사노

전화번호: 072-463-0565

※헬로워크 이즈미사노는 통역자가 없습니다.